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수급권 제한〉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02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한 수급권 제한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12
[참고]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등의 종류	13

I. 개요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80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7. 29.
- (3) 회 부 일 : 2025. 7.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4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한 수급권 제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432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1004조의2(이하 “「민법」 제1004조의2”라 한다)¹⁾에 따라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이 상실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의 수급권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4호 신설).

1) 법률 제20432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82조(급여의 제한)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82조(급여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u>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위반한 부모에 대하여 그 자녀의 사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적연금 급여의 수급권이나 상속권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정서와 보편적 윤리의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유명인의 사망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음.
- 이에 2020년 12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각각 개정되어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부모)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 불이행 기간·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²⁾가 신설된 후 2023년 10월 같은 내용

2) 「공무원연금법」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④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¹⁾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④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⑥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59조의2제6항 관련)

대상자	판단 시 고려사항
부모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

으로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었고,³⁾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⑥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5의3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 5의3]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55조의2제6항 관련)

대상자	판단 시 고려사항
부모	1. 공무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공무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공무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공무원등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

3) 「군인연금법」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③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④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 2]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42조의2제1항 관련)

대상자	판단 시 고려사항
부모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6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 7]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46조의2제1항 관련)

대상자	판단 시 고려사항
부모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제1004조의2가 2024년 9월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⁴⁾

- 참고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에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부모)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미이행한 기간·정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유족급여 등의 전부 또

4) 법률 제20432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⁵⁾

□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등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제도를 개편한 「민법」 제1004조의2 신설 취지와 다른 직역연금에서의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또한, 현행법에서는 동순위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등이 각자에게 균분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⁶⁾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급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급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금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4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①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 7]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64조의2제1항 관련)

대상자	판단 시 고려사항
부모	1. 교직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교직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교직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교직원등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한 정도

6)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 ②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망인에 대한 양육책임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상속권이 확정적으로 상실된 유족과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던 유족이 서로 동순위 수급권자로서 유족연금등을 균분 지급받게 될 경우 야기될 형평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의 퇴직유족급여등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공무원연금등”이라 한다)과 비교하여볼 때 유족연금등 수급권의 제한 절차, 대상 및 급여액 등이 서로 다른바,

국민 정서와 보편적 윤리의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 제한 사유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구현되도록 다른 직역연금의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절차) 공무원연금등의 경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인사혁신처), 군인재해보상심의회(국방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정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유족급여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 부양의무 위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등의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반환일시금)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제80조(사망일시금) ④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급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이 항소·상고 등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결정보다 속행되지 못하는 경우 ‘부양의무 위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등의 지급 제한’이라는 법적 정의 구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상) 공무원연금등에서는 망인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부모’의 퇴직유족급여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의 경우 「민법」 제1004조의2에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을 규정한 데 따라 유족의 범위⁷⁾에 포함되는 ‘조부모’의 유족연금등 수급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음.
- (급여액) 공무원연금등에서는 망인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부모의 퇴직유족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유족연금등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안 부칙에는 「민법」 제1004조의2가 시행되는 2026년 1월 1일에 맞추어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시행일에 관한 사항 외에 안 제82조제3항제4호의 적용례가 규정되어 있

7)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지 아니한바,

이 법 시행일 전에 유족연금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 8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지 등에 관한 적용례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공무원연금등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또는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 한편 공무원연금등에서는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모의 수급권 제한이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날까지 이미 지급된 급여분은 그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아 환수하는데,⁹⁾

8) 법률 제17752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775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법률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부칙 제 13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9786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법률 제16761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부칙 제 7 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978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9) 「공무원연금법」

제3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개정안의 경우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기까지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등을 환수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급여의 환수 사유를 열거한 현행법 제57조제1항¹⁰⁾ 각 호에는 공무원연금등의 입법례와 달리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등을 환수할 것인지와 유족연금등을 환수할 경우 어느 시점 이후의 지급분부터 환수할지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정에 맞추어 환수 사유(제57조제1항)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군인연금법」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군인재해보상법」

제15조(급여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加算)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10) 「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양육책임을 현저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부모에 대하여 그 자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의 수급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함.
- 한편 국민연금 수급권은 국민의 노령이나 사망 등에 대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바, 수급권자가 부모의 중대한 부양의무 해태 등을 이유로 유언을 통하여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사망과 관련한 부모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문 의 처
02)6788-5506

참고 「국민연금법」 상 유족연금등의 종류

- 현행법에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또는 미지급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은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임.
 - (수급요건)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③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④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및 ⑤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가 사망한 때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수급권이 발생함.¹¹⁾
 - (유족의 범위)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중증장애인), 부모(6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

11)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인),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중증장애인) 및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함.¹²⁾

- (급여수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각각 지급됨.¹³⁾

□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권이 없으면 그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함.¹⁴⁾

12)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지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지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14)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망일시금)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 현행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葬祭) 부조 성격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함.¹⁵⁾

□ (미지급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그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함.¹⁶⁾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15) 「국민연금법」

제80조(사망일시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2. 노령연금 수급권자
3.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④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